【 4 】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7.11. 6 .
제 출 자 : 장재훈의원외6인

□ 제안이유

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조례상의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수정함 (안 제1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"의회" 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